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37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	3

I. 개요

1.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3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24.
- (3) 회 부 일 : 2025. 2.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대상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

26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 (윤호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조세특례의 제한(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 외에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	○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한국은행법」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 외에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u><신 설></u>	26. 「한국은행법」 ○ 시행일: 2026. 1. 1.

* 윤호중의원안 2025. 2. 24. 발의(의안번호 8370)

- 개정안은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한국은행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안, 의안번호 제8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안, 의안번호 제8369호)]

현 행	개정안
<u><신 설></u>	<u>제98조의2(법인세 부과 면제) 한국은행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4조제3항1)에서 열거하고 있는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清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함.

한국은행은 1950년 최초 설립 이후 1981년까지 구 「한국은행법」 제110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 따라²⁾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및 부과금을 면제 받았으나, 과세형평 및 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³⁾에 따라 19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이후 1998년까지 정부의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방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법인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1999년 이후에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법인세 적용 세율]

(단위: %)

구분	'82~'89	'90	'91~'93	'94~'95	'96~'97	'98~'01	'25
한국은행	5	10(15)	17(25)	18(25)	16(25)	16(28)	9~
일반법인	20(30)		20(34)		16(28)		24

- 주: 1. 괄호는 1994년까지 과표 3억원 초과, 95년 이후 과표 1억원 초과 적용 세율임.
 2. 한국은행은 1983년부터 1998년까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3. 1998년 이후 8차례의 법인세율 구조 변경에 따라, 2025년 기준 한국은행과 일반법인 모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세율구조를 따르고 있음.

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한국은행법」 제110조 한국은행의 재산과 업무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은 면제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법인세와 영업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1.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 한국은행의 수익은 대부분 외화자산 운용에서 발생하므로 환율, 금리 및 외화자산 수익률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법인세 납부실적의 등락이 큰 편임.

한국은행이 2024년에 납부한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³⁾)는 2조 3,439억원(2,344억원)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을 제치고 가장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법인세	7,263	9,689	12,219	9,832	18,583	25,665	26,160	6,829	4,562	23,439
지방소득세	726	969	1,222	983	1,858	2,566	2,616	683	456	2,344
합계	7,989	10,658	13,441	10,815	20,441	~~28,231~~	~~28,776~~	7,512	5,018	~~25,782~~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호주, 독일 등은 중앙은행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영국,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법인세 납부 현황]

구분	법인세 납부 여부	자본금 출자 형태
미연준	면제	회원은행 출자
ECB	면제	회원국 중앙은행 출자
스웨덴중앙은행	면제	정부 출자

3)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에 따라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구분	법인세 납부 여부	자본금 출자 형태
스위스중앙은행	면제	정부 및 민간 출자
호주중앙은행	면제	정부 출자
독일연방은행	면제	정부 출자
룩셈부르크중앙은행	면제	정부 출자
노르웨이은행	면제	정부 출자
덴마크국립은행	면제	정부 출자
중화민국중앙은행(대만)	면제	정부 출자
인도준비은행	면제	정부 출자
프랑스은행	납부	정부 출자
영란은행(banking)	납부	정부 출자
일본은행	납부	정부 및 민간 출자

자료: 한국은행(2025년 3월 기준)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첫째,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한국은행법」⁴⁾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5대 조직가치 중 하나로 중립을 선정한 바 있음.

4) 「한국은행법」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5대 조직가치]

가치	의미
공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함
중립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책임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책무를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음
소통	임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함
전문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어 책무 수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함

자료: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 중앙은행이 과세소득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재정독립성이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⁵⁾한 바 있으며, 중앙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⁶⁾고 밝혔다.

또한, 1982년 한국은행이 과세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총 5차례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⁷⁾,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대부분 결국 정부수입으로 귀속되는 반면 정부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5) IMF, “How Should a Central Bank Be Treated for Tax Purposes?”, 2007

6) IMF, “A Central Bank’s Guid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020

7) 1998년, 2006년, 2012년, 2018년, 2023년

[최근 한국은행 대상 세무조사 결과]

구분	2012년	2018년	2023년
시기	2012. 11. 12. ~2013. 2. 28. (109일간)	2018. 3. 19. ~2018. 6. 8. (82일간)	2022. 10. 27. ~2023. 3. 3. (128일간)
대상 기간	2007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20년
과세처분사항	- 개발비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 비용으로 인식한 수선비를 자산으로 인식	- 비용으로 인식한 인건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
	- 비용으로 인식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식	- 안전설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부인	- 위탁자산 보관기관 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미이행분 과세 등
법인세 등 추가납부내역 ¹⁾	8.7억원	12.0억원	36.7억원

주: 1)“법인세 등”에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함
자료: 한국은행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한국은행에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어 한국은행의 재정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둘째,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납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금액 산출·부과 및 세무조사 수행 등 각종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각종 행정사무⁸⁾에 상당한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행은 당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세입경로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세무조사에 대한 행정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연도별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한 세무 관련 비용]

(단위: 만원)

연도	금액
2015	1,716
2016	1,758
2017	1,810
2018	13,948
2019	2,600
2020	3,150
2021	3,276
2022	38,017
2023	3,439
2024	3,638

주: 세무 관련 비용에는 세무조정, 세무진단용역 및 국제청 세무조사 관련 회계법인 용역비용(2018년 1억 2,100만원, 2022년 3억 5,200만원)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한국은행에 따르면, 법인세 부과로 인하여 세무 담당자의 인건비, 세무자문(세무조정, 세무진단 포함) 등 용역비, 전산 개발 및 유지 관리 비용, 세무조사 수검 비용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기순이익의 30%를 「한국은행법」 제99조9)에 따라 적립하고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음.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할 경우 법인세 실적이 줄어드는 반면,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늘어나게 됨.

일례로 2024년의 경우 한국은행의 세전이익은 10조 3,972억원이었는데,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 등 납부실적과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은 8조 514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은 7조 2,780억원으로 추산되어 약 7,734억원의 정부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 여부가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억원)

구분	법인세 납부시	법인세 면제시
세전 이익(A)	103,972	
법인세등(B)	25,782	0
당기순이익(C=A-B)	78,189	103,972
법정적립금(D=C×30%)	23,457	31,192
정부 세입(E=C×70%)	54,732	72,780
정부재정(B+E)	80,514	72,780

주: 임의적립금은 없다고 가정

둘째,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내국세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내국세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¹⁰⁾)와 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¹¹⁾)의 감소로 이어지고,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감소하게 됨.

중앙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납부받는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법인세 감소분을 일부 충당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는 지방재원 감소분

10)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심화시키는 간접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정부출자법인 등 다른 법인들도 유사하게 법인세 부담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